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8일

농소1동장

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서 *희	서 *희 1974-12-14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중앙로 (호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0-18

